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16

발의연월일: 2023. 2. 20.

발 의 자:김윤덕·박상혁·김병욱

정성호 · 김정호 · 윤후덕

김승남 · 강훈식 · 안호영

윤재갑 • 조오섭 • 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 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음.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 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신설).

법률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와 계약 상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의 창작·편집·발행 등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
	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와 계약 상대방이 대등
	한 입장에서 저작물의 창작ㆍ
	편집•발행 등 출판 관련 계약
	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
	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